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11. 27(월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47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최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2)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3)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 - 5년마다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
- 4)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 -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
- 5)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4항에서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,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606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